

비윤리적 이슈 신고제도 운영 및 절차 안내문

당사는 회사의 공익 보호 및 윤리 경영 준수를 위하여 우리 회사의 임직원이 사내의 비윤리적, 부정행위 등을 알게 되었을 때, 이에 대한 내부고발신고제도를 운영하여 투병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. 이에, 비윤리적 이슈신고제도 운영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- 다 음 -

1. 신고의무 및 신고대상 행위

- 1)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개인 또는 제 3 자의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
- 2) 재산의 취득, 관리, 처분 또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- 3) 권한을 남용하여 비윤리적 행위로 타 임직원을 물리적,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
- 4)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- 5)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, 예산의 목적 외 사용,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회사의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부정행위 등

2. 신고방법

- 1) 대표이사 혹은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직접 서면제출 (신고자 인적사항, 신고내용 등 대상 기재),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직접 신고 가능

* 대표이사 직접 신고 채널: 대표이사 직통 전화 010-3695-0077 / 이메일:

3buck@businessinsight.co.kr

* 윤리경영 담당부서: 경영지원팀 (연락처: 070-7812-9403 / 담당자 이메일:

aklee@businessinsight.co.kr)

- 2) 신고의 내용이 내부 공익 신고로서 합당하고, 구체적인 사실로서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윤리경영담당부서는 비실명 신고를 접수 처리할 수 있으며 비실명 신고는 서면으로 회사에 설치된 '고충처리 접수함'에 제출되어야 함.

* 고충처리 접수함: 첨부 4 비윤리적 이슈 신고서 작성 후 건의함을 통해 제보(기명 혹은 익명가능)

- 3) 내부신고는 신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함께 제시. 단, 진행 중인 부정행위 등 긴급을

요하는 경우 사실관계 선 신고 후 추후 보완 자료 제출 가능

3. 신고사항의 처리

- 1) 윤리경영담당부서의 조사담당자는 신고사실을 확인, 조사하여 회사의 윤리경영 관련 위원회를 소집,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를 '윤리 규정' 및 '징계 규정'에 의거 고발, 징계 심사 절차를 통하여 조치한다.
- 2) 신고자의 신분보장: 신고자는 신고행위에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.
- 3) 신고자의 비밀보장: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보장 되며,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신분공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.
- 4) 보복행위 금지: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,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고, 보복 행위자 또는 관련자는 보복행위에 대하여 징계, 처벌을 받는다.
- 5) 포상: 신고자가 내부부정행위를 신고하여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거나 이익을 야기한 경우, 부정한 금품수수, 괴롭힘을 당하는 임직원의 행위 등에 정확한 사실관계가 판정된 경우, 신고자는 포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- 6) 책임감면: 자신의 부정행위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, 징계 등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- 7) 허위신고: 허위 신고에 대한 신고자는 징계에 처한다.

(주)비즈니스인사이트 경영지원부서